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1
----------	-----

발의연월일 : 2025. 03. 05.

발의자 : 원주영, 한근수, 이정애,
정현미, 박은경, 김동훈,
김지훈(민), 전해연, 이진환,
한송연, 손정자, 박윤옥,
이상기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2호 및 제3호)

나.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안 제19조)

-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 외 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계법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남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을 “시장(市長)”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해”를 “관하여”로, “확인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로, “인터넷”을 “남양주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인”을 “상인조직”으로,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밀집해

있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업지역: 25개 이상
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市長)이”를 “시장(市長)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의”를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 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토지면적 : m ² , 건물연면적 : m ² , 영업장 면적: m ²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위와 같이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삭제</p> <p>3. ~ 6. (생략)</p> <p><u><신설></u></p> <p>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u>남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u>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관내 일정 지역을 <u>골목형 상점가</u>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p> <p>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p>	<p>제2조(정의) ----- -----.</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u></p> <p>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u>시장(市長)</u>----- ----- ----- ----- ----- <u>골목형상점가</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2조제12호</u>----- ----- -----.</p> <p>④ ----- ----- -----.</p>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생략)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 7. (생략)

관하여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남양주시 -----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 상인조직-----
-----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제1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다음 각 호와 같이 밀집해 있어야 ----
--.

1. 상업지역: 25개 이상
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 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
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
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
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
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
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② (생략)

③ 시장(市長)은 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
--- 경우에는 -----
----.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제1항에 따라 골
목형상점가의 -----
----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남양
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동의 기준 및 밀집기준 완화를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핵심인 개정안으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

[주요 개정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동의 기준 완화(안 제18조)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서류 제출 규정 삭제
-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안 제19조)
 - 상업지역: 2,000㎡ 이내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20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 혼재 : 50% 이상 해당하는 용도지역 적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조례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제17조·제18조·제20조)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